

제99회 제1차 목포시의회 회의록

1. 개 의 : 단기 4292년 10월 29일 상오 10시 20분
2. 폐 의 : 단기 4292년 10월 29일 하오 1시 5분
3. 장 소 : 목포시의회 의사당
4. 사 회 : 의장 김 삼 성
5. 출석의원 : 의원(재적) 16명 중 출석의원 14명
결석 강영락, 김남진 의원
6. 출석공무원 : 부시장 이병규 및 각 과장
교육감 박세문
7. 의사일정

◆ 보고사항

- (1) 제 98회 목포시의회 회의록
- (2) 건의문 및 청원서 접수 상황보고

◆ 부의사항

- (1) 단기 4292년도 제4회 목포시 일반회계 세입 세출 추가 경정예산안
- (2) 단기 4292년도 제3회 목포시 동정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
- (3) 단기 4292년도 제2회 목포시 공익 전당포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
- (4) 단기 4292년도 제2회 목포시 도선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
- (5) 단기 4292년도 제3회 목포시 수도특별 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
- (6) 단기 4292년도 목포시 일반 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
- (7) 시영 용당도선장 자동차 적재선 건조 자금 기채 승인안
- (8) 목포시 교육위원회 중요재산 처분안

- (9) 목포시 교육위원회 공무원 신원 보증조례 중 개정안
- (10) 의회 부의장 보선의 건
- (11) 각 상임위원장 호선의 건

8. 토의사항

◎ 제98회 목포시의회 회의록 통과

◇서기 박 찬 대

- 낭독
- 이의없으므로 통과

◎ 진정서 접수상황보고 - 목포공생원

◎ 청원서 접수상황보고 - 대한상무회

◇서기 박 찬 대

- 낭독

◇의장 김 삼 성

- 양건 공히 소속 상임위원회 회부 선언

◇김 상 태 의원 긴급동의

- 당 시의 시장이 공석된지 3개월이 경과하도록 아직껏 임명이 안된데 대하여 시민의 여론이 비등하고 있음은 제 의원과 함께 유감스럽게 느끼는 바로서 차라리 차기회에 이 부시장을 임명하여 주도록 당 시의회의 결의로써 관계당국에 건의할 것을 긴급동의

◇김 상 대 의원

- 김상태의원의 동의 취지에 대하여는 찬성하는 바이나 이제와서 우리 의회로서 특정인물을 임명토록 건의한다는 것은 일고의 여지가 있다고 보아지니

(1)영주(永住)시민 (2)행정수완이 탁월한 자 (3)청렴결백 (4)외교수완 풍부한 자 (5)참된 시민의 공복이 될 사람, 이러한 5개 항목에 부합된 인사를 하루

속히 임명하여주도록 동의를 고쳐주셨으면 합니다.

◇김 경 인 의원

- 김상대 의원의 동의에 찬성하면서 김상대 의원의 발언 5개항목 중 「범 시민 가운데서 선출할 것」의 1항목을 첨가토록 함이 좋을 것 같다.

◇정 응 표 의원

- 5개항목이니 6개항목의 조건을 붙여서 건의한다는 것도 보는 사람에 따라 그 각도가 틀릴 것이므로 오히려 이에 대한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이니 모든 조건을 없애고 다만 하루 속히 임명하여 달라는 건의문 만을 제출함이 좋을 것 같다.

◇김 창 희 의원

- 정응표 의원의 발언에 찬성하면서 정식 개의

◇이 정 권 의원

- 개의에 찬성발언 삼청있음

※ 각 동의 표결 결과

개의 재석 14명중 가 8표 가결

◇정 응 표 의원 긴급동의

- 풍수해 의연금으로 우리 의원 변상금에서 일일분씩을 각출하여 집행부에 전달토록 할 것을 동의

※ 표결 결과 만장일치 가결

◇의장 김 삼 성

- 부의 안건 상정 선언

※ 부의 안건 제1항부터 제7항까지

◇시정주무 박 찬 대

- 제안 이유 설명

※ 부의 안건 제8항부터 제9항까지

◇교위 서무 조 병 대

- 제안 이유 설명

◇김 경 인 의원

- 부의 안건 제1항부터 9항까지를 각기 상임분과위원회에 회부 동의하다.
- 재청...삼청이 있어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.

◎ 목포시의회 부의장 보선의 건

◇의장 김 삼 성

- 감표위원으로 김상태, 김창희 의원을 지명

※ 부의장 선거투표 상황

명남철 10표

기권 4표

◇의장 김 삼 성

- 재석의원 14명중 명남철 의원이 10표를 득점하여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

◎ 각 상임위원장 호선의 건

※ 각 상임위원장 호선 상황

내무위원장 천철수 의원

문사위원장 김성균 의원

산업위원장 김상태 의원

징계자격위원장 임석희 의원

◇의장 김 삼 성

- 이상 각 의원이 당선되었음을 선언

◇정 응 표 의원

- 근간 모 동(洞)에 있어서는 요 구호자에 대한 구호물자배정에 불미한 점이 있을 뿐 아니라 풍수해의연금 할당에 있어서도 동일한 자산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동장 자신의 클럽에 4, 5백환의 의연금을 내도록한데 반하여 자기측이 아닌 사람에게는 3, 4배의 부과를 하는 등 모순이 있는 바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요망한다.

◇김 상 대 의원

- 풍수해의연금은 호별등급에 의하여 할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의 부과위를 설명하여 주기 바란다.

◇사회과장 정 태 로 답변

- 구호대상자 선정과 수해의연금 할당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함은 실로 놀라운 일이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하겠습니다.

시에서 각동으로 할당할 적에는 호별세 등급에 의하여 배정하였으며, 각 동장에게는 각인의 실정을 참작하여 배당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.

◇김 상 태 의원

- 호별세 등급을 기준으로 하였다 하나 동일한 등급인데 같은 2,000환을 배정하였으면 을은 4,000환을 할당한 실례도 있는 것이다.

◇김 상 대 의원

- 시에서 동으로 지시함에 있어 호별세 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그 외 실정을 참작하여 부과하라고 하였다 함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.

◇정 응 표 의원

- 그러한 지시를 하였다 함은 집행부가 호별세 부과를 불공평하게 하였다

고 자인하고 들어가는 말이며 위험스러운 인물을 동장에 임명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작란이 야기되는 것이다.

◇김 창 희 의원

- 어느 동장이 정실관계에 끌려 여사(如斯)한 작란을 하였다면은 중대한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다. 문사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토록 하자.

◇정 응 표 의원

- 그리고 의연금을 2중 3중으로 각출하는 예가 있는데 한은 지점장 같은 사람은 동으로 배정된 된 것, 직정으로 배정된 것과 자진해서 사전에 회사한 것 등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.

◇이 부시장 답변

- 당 시에서는 상부의 지시에 의거 풍수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석상에서 진지한 논의를 거듭한 결과 공무원에게는 중앙 모금분과 지방모금분의 이중 각출을 불가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던 것입니다. 그리고 동장에게 그러한 불미한 사례가 있는 점에 대하여는 즉시 철저한 조사를 하겠습니다.

◇정 사회과장 보충답변

◇정 응 표 의원

- 수해의연금 할당 및 구호금품 배정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위원 출신구별로 3명씩 5반으로 구성조사토록 할 것을 동의하다.

- 재청...삼청이 있어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.

◇의장 김 삼 성

- 본건 조사로 말미암아 만약 부정이 개재한 동장이 적발할 경우에는 여하히 처결할 것인가.

◇이 부시장

- 그 정도의 경중에 따라 상응한 처단을 하겠습니다.

◇김 성 균 의원

- 용당도선장의 자동차 적재선 증선계획에 수반한 여객회사측과의 절충위원 2명 정도를 선출할 것을 동의하다.

- 재청...삼청이 있었음. 표결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.

◇의장 김 삼 성

- 절충위원으로 김성균, 김상태 의원을 지명

◇천 철 수 의원

- 근경(近頃) 갑자기 전국적으로 전력 수급상황이 불량하여 짐에 당 시내에도 상당한 전력이 감축된 것 같은데 이의 조절을 위하여 중앙에 절충위원 2인을 파견 교섭토록할 것을 동의하다.

- 재청...삼청이 있었음.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.

◇의장 김 삼 성

- 교섭위원으로 천철수, 김경인 의원을 지명

◇의장 김 삼 성

- 산회 선언

이 회의록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에 서명 날인함
단기 4292년 10월 30일
시의원 (이하 누락)

제 99회 제2차 목포시의회 회의록

1. 개 의 : 단기 4292년 10월 30일 상오 10시 40분

2. 폐 의 : 단기 4292년 10월 30일 하오 3시 0분

3 장 소 : 목포시의회 의사당

4. 사 회 : 의장 김 삼 성

5. 출석의원 : 재직 16명 중 출석의원 14명
결석 강영락, 김남진 의원

6. 출석공무원 : 부시장 이병규 및 각 과장
박세문 교육감

7. 의사일정

◆보고사항

- 각 상임위원회 회의 상황보고

◆부의 안건

- 제1차 회의시와 동일함.

8. 토의사항

◎ 각 상임위원회 회의상황보고

◇내무위원장 천 철 수 종합심의 보고

- 부의안건 제1항부터 제8항까지 각각 원안 무수정 통과를 보았습니다.

◇의장 김 삼 성

- 부의안건 상정 선언

◎ 단기 4292년도 제4회 목포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

◇김 경 인 의원 질문

- (1) 시립병원 의사진에서 외과 의사 시내에서 개업하기 위하여 퇴직하고 또 산부인과 의사도 근근(近近) 퇴임한다는데 이에 수반하여 병원운영면에 어떠한 영향을 초래하지 않겠는가.
- (2) 호적 수수료 계상에 있어서 저간 실시한 도민증 경신 당시 만여 건의 신규발급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의 수수료가 불과 기백 건밖에 안된 이유 여하
- (3) 도시계획비의 전기가설료는 매월 분인지 일시분인지 답변하여 주기 바란다.

◇정 응 표 의원 질문

- (1) 시립병원의 신축병사와 관련하여 앞으로의 운영방안 여하
- (2) 가로등 시설에 있어서 앞으로도 시민 중 유지가 가로등을 시설하게 되면 요금은 시에서 부담할 것인가.

◇박 시립병원장 답변

- 결원된 의사진의 보충을 최단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관계당국에 호소하여 극력 노력하려 합니다.

◇박 호병과장 답변

- 김경인 의원이 말씀하신 도민증 신규 발급에 수반한 수수료 수입문제는 시당국에 조회하면 아실 일이지만 3,000건이 초과 안 될 것입니다.

◇장 총무과장 답변

- 전등 가설에 대한 요금은 3개월분을 계상하였습니다.

◇정 응 표 의원

- 앞으로도 각동의 반에서 요소 요소에 가로등을 가설하였을 경우 그 요금은 시에서 부담하겠는가 확답하여주기 바란다.

◇김 경 인 의원

- 시립병원은 결원된 과의 진료에 있어서 즉시 시내 개업의를 촉탁으로 초빙할 의향은 없는가.

◇김 창 희 의원

- 대성2구동의 판도(坂道) 언덕길 수선 및 시도 18호선 판도 개수공사비를 계상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망한다.

◇박 시립병원장 답변

- 시내 개업의로 하여금 촉탁으로 한다는 것은 곤란한 문제이며 급선무가 의사진의 처우개선인 것입니다.

◇장 총무과장 답변(건설과 소관)

(1) 대성 2구성 판도 수선은 대성병원 앞이고 18호선 수선은 평극(平劇-평화극장) 앞 보도입니다.

(2) 시도 14호선은 유변호사 집 앞의 판도 수선인 것입니다.

◇김 상 대 의원

- 대성2구 판도 수선 관계 보충답변

◇김 상 태 의원

- 제14호선 판도 수선 관계 보충 답변

◇명 남 철 의원

- 산업과 소관의 전화사용료를 (210,000환) 과년도 지출분 계상한 이유 여하

◇김 산업과장 답변

- 산업과에서 사용하던 전화사용료를 일반회계에서 지변하여오다가 산업과 잡종금이던 양특(糧特)으로 전환하였는데 그후 양특이 없어지는 바람에 부득이 일반회계로 환원지변토록 한 것입니다.

◇김 상 태 의원

- 시도 제14호선 구역내에 무허가 판자 집이 3동 있는 바 집행부에서는 이를 서 당국과 절충하여 철거할 수 있도록 부탁하는 바이다.

◇김 성 균 의원

- 원안 통과 동의하다.

- 재청...삼청이 있었음. 표결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.

◇정 응 표 의원

- 부의안건 제2호를 상정하기 전에 목포사회사업연합회로부터 제출된 청원서를 위선 상정 토의하도록 의사일정 변경 동의

- 재청...삼청이 있어 표결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.

◎ 청원서 (목포사회사업연합회) 접수 의견

◇서기 박 찬 대

- 청원서 낭독

◇정 응 표 의원 소개발언

- 청원의 골자는 호맥(胡麥-호밀)은 시에서 보관하고 그 외 양곡만을 배급하여 달라는 것입니다.

◇김 상 대 의원

- 본건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의견을 청취키로 함이 좋을 것 같다.

◇김 연 수 산업과장, 정 태 로 사회과장

- 경위 설명

◇명 남 철 의원

- 청원의 요지대로 호맥은 시에서 보관하고 그 외 양곡만을 배급토록 영단을 내릴 용의는 없는가.

◇김 창 희 의원

- 집행부로서도 고충이 있는 것을 보관하도록 강요할 것이 아니라 일단 전량을 수배(受配)토록 하였다가 앞으로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될 것이다.

◇이 부시장

- 청원의 내용은 행정질서상 불가능한 일입니다.

◇의장 김 삼 성

- 본건에 대하여는 의회측에서 대표 3명을 선정하여 사회사업측 대표, 집행부 대표 3자 합의하에 원만한 타협을 가지도록 함이 좋을 것 같다. 가결
- 의회측 대표로 명남철, 김성균, 정응표 의원을 지명

◇의장 김 삼 성

- 오전 회의 휴회 선언 (하오 1시 현재)

- 회의 속개 선언 (하오2시 10분 현재)

◎ 단기 4292년도 제3회 목포시 동정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

◎ 단기 4292년도 제2회 목포시 공전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

◎ 단기 4292년도 제2회 목포시 도선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

◎ 단기 4292년도 제3회 목포시 수도특별 회계 추경 예산안

◎ 단기 4292년도 목포시 일반 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

◇김 상 대 의원

- 공익전당포의 추경예산안이 제안되었는데 이 공익전당포 운영에 있어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보조직원이 음주가 과도한 편이어서 입질물의 반환 등에 차질이 생(生)할 우려가 없다고 볼 수 없는 형편이라 하니 주임이 신임할 수 있는 직원과 대체토록 할 것을 요망한다.

◇김 성 균, 정 응 표 의원

- 찬반발언이 있었음.

◇김 창 희 의원

- 전기4건 전문위원회 및 내무위원회에서 심심검토한 것이니 제반절차를 생략하고 원안 무수정 통과 할 것을 동의하다.

- 재청...삼청있어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통과

◎ 단기 4292년도 목포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

◇김 상 대 의원

- 원안통과 동의하다.

- 재청...삼청이 있었다.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.

◎ 시영 용당도선장 자동차 적재선 건조자금 기채승인안

◇김 상 대 의원

- 본안에 대하여 승인할 것을 찬성하면서 용당도선장의 정상적인 운영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우리 의회측에서 일개월 간 수개 반을 편성하고 직접 의원들을 파견할 것을 동의

◇명 남 철 의원

- 철선 1척을 증조한다고 하여 도선을 이용하는 여객이 격증할 리 없는 형편인데 전차의 기채분과 금반 것을 합하여 8백여만환을 어떻게 상환할 것인가. 이의 운영에는 상공회의소 측과 번영회 측의 절대적인 협조가 요청되는 것이다.

◇김 창 희 의원

- 당 시의 발전을 위하여 철선 1척의 증조는 부득이 한 것이니 본건 원안 승인할 것을 동의하다.

- 재청...삼청이 있어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.

◎ 목포시 교육위원회 기본재산 처분안

◎ 목포시 교육위원회 공무원 신원보증 조례중 개정안

◇김 경 인 의원

- 원안 통과 동의하다.

- 재청...삼청이 있어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.

◇김상대 의원의 도선장 파견 동의 - 일응 보류

◎ 대한상무회 목포시 분회 및 공생원으로부터 제출된 청원서

◇의장 김 삼 성

- 집행부에 이송할 것을 선언

- 폐회 선언

(하오 3시 0분)

이 회의록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에 서명 날인함.

단기 4292년 11월 1일

시의원 김 성 균

시의원 김 상 태

작성자 서기 주 도 식